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86호 2013. 1. 16. (수)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3-13호 공시송달 공고 ..... 1
- 제2013-15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
- 정선군 공고 제2013-23호 예방접종 공고 ..... 7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1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정선읍) ..... 8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2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남면) ..... 9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3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화암면) ..... 10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4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여량면) ..... 11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5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북평면) ..... 12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임계면) ..... 13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7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신동읍) ..... 14
- 강원도 공고 제2013-27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안) 일반인열람(2차)· 15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 2013-13호

##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유예)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지이주자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3. 01. 07 ~ 2013. 01. 20(14일)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의 처분명령유예대상자 내역

| 처 분 대 상 농 지 |     |    |    |    |           | 대 상 자                                     |     | 처분사유 | 반송사유  |
|-------------|-----|----|----|----|-----------|-------------------------------------------|-----|------|-------|
| 군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br>(㎡) | 주 소                                       | 성 명 |      |       |
| 정선          | 화암  | 석곡 | 6  | 전  | 1,530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707-32,<br>14통4반 성주빌라 9동 B02호 | 김정희 | 휴경   | 현지이주자 |

5.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사유 : 농지법 제12조 제1항(처분명령의 유예)
6.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기간
  - 2012. 12. 28 ~ 2015. 12. 27(3년)
7. 안내사항
  - 농지처분명령을 유예(3년)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되며,
  -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매도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촌개발팀(033-560-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3.

정 선 군 수

## 정선군 공고 제2013-15호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 4.

## 정 선 군 수

1. 규 칙 명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2. 폐지이유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되었기에 개정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녹색환경과(우편번호 233-804)

－ 전화 033-560-2336, FAX 033-560-2589

붙임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개정(1999. 10. 16 규칙 제9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의 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업개시일 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쓰레기 발생량등의 기록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발생량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 등을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확인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은 수거시마다 계량하여 음식물쓰레기배출자로부터 배출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배출확인서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는 정선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5L 단위로 올림계산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와 납부고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부독촉장(별지 제10호서식)을 발 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확인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서식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서식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서식3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서식4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서식5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서식6 음식물쓰레기 배출확인서

서식7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납입고지서

서식8 과태료 처분 통지

서식9 과태료납부통지서·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서식10 과태료납부독촉장

서식11 과태료처분취소(변경)통지서

서식1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1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서식14 과태료수납부

## 정선군 공고 제2013 - 23호

## 예 방 접 종 공 고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6조에 의거 2013년 시행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07.  
정 선 군 수

| 접종명                    | 대 상                                         | 접종일시                      | 장 소                                            | 수 수 료                  | 비 고                           |
|------------------------|---------------------------------------------|---------------------------|------------------------------------------------|------------------------|-------------------------------|
| 비이지 (BCG)              | 생후4주이내                                      | 매주목요일<br>매주수요일            | 보건소<br>고한사북,신동,임계면지소                           | 무료                     | 오전접종<br>(10:00~12:00)         |
| 소아마비                   | 생후2,4,6개월(3회)<br>만4~6세(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오전접종<br>(09:00~12:00)         |
| 디티에이피                  | 생후2,4,6개월(3회)<br>생후15~18개월(1회)<br>만4~6세(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                             |
| DTaP-IPV<br>혼합백신       | 생후2,4,6개월(3회)<br>만4~6세(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                             |
| 뇌수막염 (hib)             | 생후2,4,6개월(3회)<br>생후12~15개월(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2013년 3월부터 시행                 |
| 엠엠알<br>(홍역,볼거리,<br>풍진) | 생후12~15개월(1회)<br>만4~6세(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오전접종<br>(09:00~12:00)         |
| 수두                     | 생후12~15개월(1회)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                             |
| B형간염                   | 0~65세                                       | 매주월~금요일                   | 보건소<br>보건지소                                    | 소인:2,020원<br>대인:3,530원 | 영유아 오전접종<br>(09:00~12:00)     |
| 일본뇌염                   | 만1~12세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
| 티디 또는<br>Tdap백신        | 만11세~12세                                    | 매주월~금요일<br>매주수요일<br>매주화요일 | 보건소,고한사북지소<br>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br>임계면지소<br>북평면지소 | 무료                     |                               |
| 장티푸스                   | 만5~65세                                      | 매주월~금요일                   | 보건소,보건지소                                       | 무료                     | 장티푸스보균자밀접접촉<br>자,유행지역여행자 등    |
| 신증후군<br>출혈열            | 중학생이상                                       | 매주월~금요일                   | 보건소,보건지소                                       | 무료                     | 농업,임업종사자, 야외활<br>동이 많은 주민대상접종 |
| 폐구균                    | 만65세이상노인                                    | 매주월~금요일                   | 보건소,보건지소                                       | 무료                     | 2013년5월부터 시행                  |
| 인플루엔자                  | 만3세이상주민                                     | 매년10~12월                  | 보건소, 보건지소                                      | 미정                     | 매년수수료변경                       |

※ 지참물 : 건강보험카드, 어린이건강수첩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1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송오마을하수도처리시설
2. 공공하수도 위치 : 정선읍 송오다래길 (덕송리 288)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송오처리지역(11.50ha) : 정선읍 덕송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³)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³) | 비고 |
|------|----------|-------|-----------|-----------------------|----------|----|
| 송 오  | 11.5     | 49    | 11        | 150                   | 35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5 (북실리 82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 정선군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2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문곡마을하수도처리시설  
낙동마을하수도처리시설
2. 공공하수도 위치 : 남면 칠현로 131-11 (문곡리 68-1)  
남면 광락로 56-18 (낙동리 300)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문곡처리지역(26.40ha) : 남면 문곡리
  - 낙동처리지역(18.30ha) : 남면 낙동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 <sup>3</sup> )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 <sup>3</sup> ) | 비고 |
|------|----------|-------|------------------------|-----------------------|-----------------------|----|
| 계    | 44.7     | 1,241 | 283                    |                       | 290                   |    |
| 문 곡  | 26.4     | 1,000 | 230                    | 150                   | 230                   |    |
| 낙 동  | 18.3     | 241   | 53                     | 150                   | 60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5 (북실리 82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3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화암마을하수도처리시설  
돌목마을하수도처리시설  
하동마을하수도처리시설
2. 공공하수도 위치 : 화암면 화암동굴길 50 (화암리 540)  
화암면 돌목길 (석곡리 1195-4)  
화암면 물운본동길 (물운리 267-6)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화암처리지역(25.27ha) : 화암면 화암리
  - 돌목처리지역(14.60ha) : 화암면 석곡리
  - 하동처리지역( 6.70ha) : 화암면 물운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 <sup>3</sup> )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 <sup>3</sup> ) | 비고 |
|------|----------|-------|------------------------|-----------------------|-----------------------|----|
| 계    | 46.57    | 1,414 | 195                    |                       | 302                   |    |
| 화 암  | 25.27    | 1,287 | 166                    | 150                   | 230                   |    |
| 돌 목  | 14.60    | 60    | 14                     | 150                   | 32                    |    |
| 하 동  | 6.70     | 67    | 15                     | 150                   | 40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5 (북실리 82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0.

정 선 군 수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4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여량하수처리장  
구절마을하수도처리시설  
봉정마을하수도처리시설
2. 공공하수도 위치 : 여량면 여량3길 1-43 (여량리 664-4)  
여량면 노추산로 793-9 (구절리 290-1)  
여량면 봉정안길 (봉정리 351)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여량처리지역(32.23ha) : 여량면 여량리
  - 구절처리지역(26.60ha) : 여량면 구절리
  - 봉정처리지역( 4.90ha) : 여량면 봉정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 <sup>3</sup> )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 <sup>3</sup> ) | 비고 |
|------|----------|-------|------------------------|-----------------------|-----------------------|----|
| 계    | 63.73    | 1,738 | 300                    |                       | 460                   |    |
| 여 량  | 32.23    | 1,490 | 243                    | 168                   | 300                   |    |
| 구 절  | 26.60    | 212   | 49                     | 150                   | 100                   |    |
| 봉 정  | 4.90     | 36    | 8                      | 150                   | 60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5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북평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가평마을하수도처리시설  
문화마을하수도처리시설
2. 공공하수도 위치 : 북평면 북평강변로 (북평리 819-12)  
북평면 가평길 (장열리 183)  
북평면 남평강변로 (남평리 978-9)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북평처리지역(77.60ha) : 북평면 북평리
  - 가평처리지역( 9.60ha) : 북평면 장열리
  - 문화처리지역(46.90ha) : 북평면 남평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 <sup>3</sup> )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 <sup>3</sup> ) | 비고 |
|------|----------|-------|------------------------|-----------------------|-----------------------|----|
| 계    | 134.1    | 1,366 | 315                    |                       | 408                   |    |
| 북 평  | 77.6     | 1,220 | 281                    | 150                   | 300                   |    |
| 가 평  | 9.6      | 43    | 10                     | 150                   | 28                    |    |
| 문 화  | 46.9     | 103   | 24                     | 150                   | 80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5 (북실리 82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6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람·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공하수도 명칭 : 임계하수처리장
2. 공공하수도 위치 : 임계면 봉산리 백두대간로 (봉산리 318-6)
3.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위치
  - 송계처리지역(32.23ha) : 임계면 송계리
  - 봉산처리지역(30.50ha) : 임계면 봉산리
5.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분류식
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대상지역 | 처리면적(ha) | 인구(명) | 계획오수량(m <sup>3</sup> ) | 설계유입수질<br>(BOD, mg/L) | 시설용량(m <sup>3</sup> ) | 비고 |
|------|----------|-------|------------------------|-----------------------|-----------------------|----|
| 계    | 63.73    | 2,060 | 529                    | 168                   | 600                   |    |
| 송 계  | 33.23    | 1,946 | 503                    |                       |                       |    |
| 봉 산  | 30.50    | 114   | 26                     |                       |                       |    |

7. 공람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5 (북실리 82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7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 공람 ·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시 설 명 : 신동읍 예미, 함백처리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2.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하수처리구역(공람도면 참조)
3.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위치
  - 가. 예미처리구역(0.424km<sup>2</sup>) : 신동읍 예미 1, 3 ~ 7리(7리 일부지역)
  - 나. 함백처리구역(1.036km<sup>2</sup>) : 신동읍 조동 1, 3 ~ 9리, 방제 1리(1리 일부지역)
4.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합류식 ⇒ 분류식
5. 공공하수도 현황 : 분류식오수관로 L=11.6km(D200~250mm)
6. 하수처리장 시설(설계)용량 : 신동읍하수처리장 Q=1,200톤/일
7. 공고기간 : 2013. 1. 11 ~ 2013. 01. 30(20일간)
8. 공람장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9. 사용개시일 : 2013년 01월 11일
10. 문의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및 평면도내 편입여부 열람(033-560-2524)

2013. 1. 11.

정 선 군 수

강원도 공고 제2013 - 27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안) 일반인 열람(2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안)에 대한 제2차 일반인 열람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3. 1. 11.

## 강 원 도 지 사

## I. 특구종합계획(안) 일반인 열람

1. 열람기간 : 2013. 1. 11. ~ 2013. 1. 24
2. 열람장소 : 강원도(총괄기획과), 강릉시(지원총괄과),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 정선군(동계올림픽지원단)  
※ 인터넷 홈페이지 : 강원도([www.provin.gangwon.kr](http://www.provin.gangwon.kr)), 강릉시([www.gangneung.kr](http://www.gangneung.kr)),  
평창군([www.happy700.or.kr](http://www.happy700.or.kr)), 정선군([www.jeongseon.go.kr](http://www.jeongseon.go.kr))
3. 의견제출 :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제 목 | 특구종합계획(안) 내용                          | 의견사항 | 비 고 |
|-----|---------------------------------------|------|-----|
| 제출자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     |

## II.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안) 개요

##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특구명칭          | 위 치              | 면 적                  |
|---------------|------------------|----------------------|
| 합계            | 3개 시·군, 6개 특구    | 36.28km <sup>2</sup> |
|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   | 평창군 대관령면, 진부면 일원 | 20.87km <sup>2</sup> |
|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 | 평창군 봉평면 일원       | 5.29km <sup>2</sup>  |
| 오대산 자연명상 특구   | 평창군 진부면 일원       | 0.63km <sup>2</sup>  |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강릉시 교동 일원 외      | 4.69km <sup>2</sup>  |
| 금진 온천휴양 특구    | 강릉시 옥계면 일원       | 0.34km <sup>2</sup>  |
| 정선 생태체험 특구    | 정선군 북평면 일원       | 4.46km <sup>2</sup>  |

2.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32년까지(1단계 2018년, 2단계 2032년)

3. 특구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

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현황 및 발전방향

나. 동계올림픽 특구의 설정

다. 동계올림픽 특구발전 종합구상

라. 동계올림픽 특구발전 부문별 종합계획

※ 토지이용·인구수용·산업유치·관광개발계획 등

마. 집행 및 관리계획 등

※ 세부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부서에 비치

### Ⅲ. 기타사항

가. 특구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강릉시 지원총괄과(☎033-640-5961)

※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6)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083)

※ 233-80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애산로 60

○ 강원도 총괄기획과(☎033-249-3178)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